

		업 무 연 락		전건협 울산 제413호 2026. 7. 20		
제 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관련 찬성의견 개선 협조 요청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최근 김종양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7, 2026. 7. 9)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법예고기간내(27. 7. 22 까지)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최대한 많은 찬성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근로자가 이동·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안 제40조의2)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제6항제3호) 나. 의견작성방향 : 찬성의견 중심 간략 작성 다. 의견제출방법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https://pal.assembly.go.kr/napal/main/main.do) ※ 로그인 → 법률안 검색·선택 → 의견작성·등록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협조요청 1부. 3.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 방법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사무처장 전 성 국 수신처 회원사						
회 랑						